

세금 문제

- * 재산세
- * 납세
- * 재산세 면제
- * 재산세 경감
- * 영업세
- * 회계 감사
- * 징수
- * 임대료 동결



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주요정보



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재무부는 귀하의 부동산(예, 평방 피트, 구조 등)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수정하려면 1~3인 가족 부동산 소유자는 “부동산 데이터 갱신 신청(Request to Update Property Data)”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. 4~10인 가족 부동산 소유자는 “재산세 사정액 검토 신청(Request for Review of Property Tax Assessment)”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. 양식은 nyc.gov/finan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3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. 5개 자치구 이외 지역에서는 212-639-9675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시장 가격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nyc.gov/finance에서 확인할 수 있는 “부동산 가격 검토 요청(Request for Review of Property Value)”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.

평가 또는 면제된 가격이 부정확하거나, 면제가 거부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뉴욕 시 세무 위원회(NYC Tax Commission)에 이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nyc.gov/html/taxcomm를 방문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.



뉴욕 시 납세자 권익 사무소



뉴욕 시 재무부(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)의 일반적인 경로를 통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, 납세자 권익 사무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납세자 권익 사무소에서 언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?

귀하의 문제가 다음 지침 중 최소 한 가지에 부합해야 합니다:

1. 재무부와 귀하의 질의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시의적절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
2. 재무부가 세법, 규칙 또는 정책을 불공정하게 또는 잘못 적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하의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3. 귀하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채로 인해 재무부가 임박한 조치를 취할 위험에 처했을 경우(예, 자금 또는 부동산의 압류)
4. 부정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채로 인해 재무부가 임박한 조치(예, 자금이나 부동산의 압류)를 취할 위험에 처했을 경우
5. 귀하가 구제받지 못하면 회복 불능의 손해를 입거나 장기적인 악영향에 처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
6. 귀하의 문제가 다른 유사한 납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재무부의 시스템이나 절차의 문제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
7. 귀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사실이 납세자 권익 사무소의 도움을 정당화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
8. 강압적 공공 정책을 이유로 귀하가 납세자 권익 사무소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

재무부에 연락하기

<http://www1.nyc.gov/site/finance/about/contact-us.page>

아래의 경우 납세자 권익 사무소는
귀하를 도울 수 없습니다:

- 귀하가 311번 전화를 포함한 재무부의 정상적 경로를 통해 구제를 얻기 위한 합당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
- 법률적 또는 세금 환급 준비 자문을 요청 중인 경우
- 세무 위원회, 세금 심사 재판소 또는 뉴욕시 법원에 제소했거나 제소할 예정인 경우
- 세무 위원회, 세금 심사 재판소 또는 뉴욕 주 법원의 불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
- 뉴욕 시 세법 또는 세무 제도가 뉴욕 주 정부 또는 미연방 헌법에 침해됨을 주장하는 경우
- 납세자 권익 담당자가 귀하의 질의의 주안점이 뉴욕 시 세금을 회피 또는 연체, 미납을 목표로 한 불성실한 술책이라고 판단한 경우

도움 요청하기:



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DOF 911 양식
“납세자 권익 사무소 지원 요청(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)” 작성

웹 사이트: www.nyc.gov/taxpayeradvocate

이메일:
DOFTaxpayerAdvocate@finance.nyc.gov

전화: (212) 312-1800 또는 3-1-1

팩스: (646) 500-6907 또는 (212) 676-2940

우편 요청:

The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
253 Broadway, 6th Floor
New York, NY 10007

주의: 납세자 권익 사무소는 주차권에 관련한 질의나 불만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. 뉴욕 시 개인 소득세나 영업세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[뉴욕주 납세자 권익 사무소에](http://www1.nyc.gov/site/finance/about/contact-us.page) (518) 530- 43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연방 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[국가 납세자 서비스\(National Taxpayer Services\)](http://www.irs.gov) 무료 전화번호 1-877-777-477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납세자 권익 사무소는 귀하가 스스로 재무부와 문제를
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후에야 귀하의 뉴욕 시 세금 문제
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